◉산림청고시 제2021-68호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일부개정 고시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종자검정 기준) ① 종자의 품질검정은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종의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관련 학술자료 등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본문 중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이종종자 비율, 이물 비율, 발아률, 수분함량”을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발아율, 수분함량”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 중 “폐기처분 한다”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와 제11조를 각각 제12조와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검정기록부 관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본문 중 “산림용 종자감정 요령”을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종자(균)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

1. 종자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

연번	국 명	과 명	학 명	소집단의 최대중량(kg)	제출 시료(g)	검정 시료 (g)
1	삼나무	낙우송과	Cryptomeria japonica	1,000	20	10
2	일본잎갈나무	소나무과	Larix kaempferi	1,000	24	10
3	가문비나무	〃	Picea jezoensis	1,000	25	7
4	소나무	〃	Pinus densiflora	1,000	60	30
5	잣나무	〃	Pinus koraiensis	1,000	2,000	1,000
6	스트로브잣나무	〃	Pinus strobus	1,000	90	45
7	곰솔	〃	Pinus thunbergii	1,000	70	35
8	편백	측백나무과	Chamaecyparis obtusa	1,000	12	6
9	화백	〃	Chamaecyparis pisifera	1,000	10	3
10	향나무류	〃	Juniperus spp.	1,000	100	50
11	가래나무	가래나무과	Juglans mandshurica	5,000	500립	500립
12	먼나무	감탕나무과	Ilex rotunda	1,000	200	90
13	화살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1,000	200	100
14	느릅나무류	〃	Ulmus spp.	1,000	30	15
15	느티나무	느릅나무과	Zelkova serrata	1,000	60	30
16	단풍나무	단풍나무과	Acer palmatum	500	100	50
17	백합나무	목련과	Liriodendron tulipifera	1,000	180	90
18	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a	1,000	400	200
19	포플러류	버드나무과	Populus spp.	50	5	2
20	버드나무류	〃	Salix spp.	50	5	2
21	양버즘나무	버즘나무과	Platanus occidentalis	1,000	25	6
22	은행나무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5,000	500립	500립
23	자작나무류	자작나무과	Betula spp.	300	10	1
24	서어나무	〃	Carpinus laxiflora	1,000	500	250
25	개암나무류	〃	Corylus spp.	5,000	500립	500립
26	산사나무	장미과	Crataegus pinnatifida	1,000	400	200
27	야광나무	〃	Malus baccata	1,000	50	25
28	복사나무	〃	Prunus persica	1,000	500립	500립
29	벚나무류	〃	Prunus spp.	1,000	500	250
30	배나무류	〃	Pyrus spp.	1,000	180	90
31	찔레꽃	〃	Rosa multiflora	1,000	50	25
32	마가목	〃	Sorbus commixta	1,000	25	10
33	주목	주목과	Taxus cuspidata	1,000	320	160
34	밤나무류	참나무과	Castanea spp.	5,000	500립	500립
35	너도밤나무	〃	Fagus engleriana	5,000	1000	600
36	참나무류	〃	Quercus spp.	5,000	500립	500립
37	산딸나무	층층나무과	Cornus kousa	1,000	300	150
38	칠엽수	칠엽수과	Aesculus turbinata	5,000	500립	500립
39	족제비싸리	콩과	Amorpha fruticosa	1,000	1,000	150
40	아까시나무	〃	Robinia pseudoacacia	1,000	100	50
41	피나무류	피나무과	Tilia spp.	1,000	180	90
42	벌개미취	국화과	Aster koraiensis	5,000	20	5
43	수레국화	국화과	Centaurea cyanus	5,000	40	10

44	기생초(춘자국)	국화과	Coreopsis tinctoria	5,000	5	1
45	황화코스모스	국화과	Cosmos sulphureus	5,000	80	20
46	루드베키아	국화과	Rudbeckia hirta	5,000	5	1
47	톨훼스큐	벼과	Festuca arundinacea	10,000	50	5
48	페레니얼라이그라스	벼과	Lolium perenne	10,000	60	6
49	켄터키블루그라스	벼과	Poa pratensis	10,000	5	1
50	패랭이꽃	석죽과	Dianthus chinensis	5,000	10	3
51	안개초	석죽과	Gypsophila elegans	5,000	10	2
52	자운영	콩과	Astragalus sinicus	10,000	90	9
53	비수리	콩과	Lespedeza cuneata	10,000	30	3
54	벌노랑이	콩과	Lotus corniculatus	10,000	30	3
55	자주개자리(알팔파)	콩과	Medicago sativa	10,000	50	5
56	레드크로바	콩과	Trifolium pratense	10,000	20	2

2. 종균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

	순도검정(g)	위해성 물질(g)	이물(오염균)검정(g)
증식용 톱밥종균 및 성형종균	500g × 5반복 = 2,500g	500g × 5반복 = 2,500g	5g × 5반복 = 25g

3. 기타 종자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

○ 대립종자 : 500립 이상 (잣 종자를 기준으로 큰 종자)

○ 중·소립종자 : 5,000립 이상 (잣 종자를 기준으로 같거나 작은 종자)

※ 종자검정 항목 중 용적중을 신청하는 경우 수종에 상관없이 4L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연번	작물명	학명	품종명	시료채취 장소	시료채취 년월일	소집단(Lot) 번호	전체중량 (kg,주)	시료점수 (점)	시료의 중량(g,주)
1									
2									
3									
4									
5									
6									
7									
8									

■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별지 제2호서식]

검정결과 관리 대장

◆검정 기관명 :

신청인 (업체명)	소집단 번호	작물명 (품종명)	검정 신청일	전체 중량 (kg,주)	시료 중량 (g,주)	결과 송부일	교부 번호	검정결과		비고
								정립 (%)	발아율 (%)	